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홍 보 담 당 관

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이탕모 의원

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
(이탕모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6. . .
발 의 자 : 이탕모 의원(1인)
찬 성 자 : 김영태·김재우·김정도·김지식 박윤경·유승헌·이정희·장진호 의원(8인)

1. 제안이유

국내·외 각 분야에서 인지도와 전문성을 갖춘 저명인사를 구미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브랜드 가치와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, 홍보대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홍보대사 운영, 위촉 및 임기,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
다. 의회 의견 청취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라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마.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나. 부서검토: 홍보담당관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구미시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에 관한 사항
2.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
3. 지역특산물, 문화관광자원,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
4.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3조(홍보대사 운영) ① 홍보대사의 총괄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고, 활용 등 운영은 사업 부서별로 이를 주관한다.
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위촉 및 임기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국내·외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

2. 시의 경제적,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

3. 그 밖에 국내·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

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양측의 해촉·사임의 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(해촉)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

2.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
4.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의회 의견 청취 및 의견 반영) ① 시장은 홍보대사를 위촉 및 해임하기 전 구미시의회에 대상자의 자격, 위촉 필요성 및 활동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홍보대사 위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구미시의회 의원
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.

④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를 소집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보상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실제 비용은 실제로 소요된 숙식비, 차량운행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홍보담당관

조 례 명	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

□ 검토 사항

○ 근거 법령

▪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

□ 주요 사항

○ 목적 및 임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○ 홍보대사 운영, 위촉 및 임기,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～제5조)

○ 의회 보고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～제8조)

○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□ 검토 결과

○ 구미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○ 기대효과: 홍보대사로 구미시 브랜드 가치와 대외적 위상 제고

○ 소요예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안 제9조(보상) 제1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 및 격려금품 비용 지급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

○ 홍보대사의 활용 횟수가 미정이며, 출연 방식 및 홍보 방법 등에 따라 출연료 상이

4. 작성자

○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최종규(☎054-480-6703)